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 까지 1년 연장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21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7. 25. ~ 7. 29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10월 31일”을 “2020년 10월 31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제6905호, 2018. 10. 4.></p> <p>제1조(시행일) (생략)</p> <p>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</p> <p>제21조제3항의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<u>2019년 10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제6905호, 2018. 10. 4.></p> <p>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</p> <p>----- ----- <u>2020년 10월 31일</u>-----.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
추가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문제호(☎ 2133-6724)